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5. 10. 27

나. 회부일자 : '95. 10. 27

3. 제안이유

- 지방공사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나친 신분보장과 연임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의료원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

4. 주요골자

- 의료원 임원중 원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단축
 - 2회 연임 → 1회 연임
 - 연임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 의료원장 면직요건을 변경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 당해 의료원 이사회에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를 추가

5. 검토의견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나친 신분보장과 연임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의료원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11조 의료원 임원중 원장의 연임 횟수를 2회 연임과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 추가로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경영실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12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에만 도지사가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었던 것을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와 당해 의료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등

원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여 의료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본래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인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케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